

#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조명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01년 6월 12일

제 출 자: 조명호의원외 12인

## 제안이유

- 이천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기의 고장으로 자리잡혀감에 따라 전통 문화인 도자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서 정진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명장 선정 인원을 분야별로 하고 대상 분야를 성형, 조각, 유약, 전통가마 소성, 조소, 서화분야로 정함.(안 제3조)
- 명장 선정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대상 분야와 기준은 선정일 2월전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4조)
- 명장의 자격은 이천시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50세이상으로 함.(안 제5조)
- 명장은 명장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 증서를 수여하도록함.(안 제7조)
- 명장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명장에 대하여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 부착,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관리, 도자기 사업에 관하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자기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도자기 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도자기 명장(이하 ”명장“이라한다)”이라 함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도예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인원 및 분야) ①선정 인원은 분야별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명장선정 대상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성형분야
2. 조각분야
3. 유약분야
4. 전통가마소성분야
5. 조소분야
6. 서화분야

제4조(선정방법) ①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조제2항의 대상분야와 기준은 선정일 2월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이상 직접 종사한자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 이어야 한다.

(제48회-산업건설위 제2차)

제6조(명장의 선정신청절차) ①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장으로 선정 받고 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명장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에 관한 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①명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분야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인사와 도자산업등 이와 관련 있는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명장에 대한 대우) ①시장은 명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 부착

2.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관리

3. 도자기 관련 사업에 관하여 우선권 부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